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528

발의연월일: 2024. 12. 16.

발 의 자: 안호영 · 윤준병 · 정을호

박희승 • 이학영 • 이원택

박 정・김주영・어기구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고,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관은 매출액 구간별로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차등적용하면서 매출액 10조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최대 2.5%의 부과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협은행 영업이익은 2017년 대비 2021년 두배로 급증하였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연 4천억원대로 유사했고, 농협증권은 2021년 직전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에 이르지만 농업지원사업비는 0.31%만 부과하고 있음.

이는 11년 전에 책정된 농업지원비 상한선이 변경 없이 지속되어, 금융지주의 막대한 영업수익의 증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 등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농협금융지주와 같이 영업수익이 막대하고 그증가가 뚜렷한 법인에 대하여 부과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9조의2). 법률 제 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9조의2제1항 본문 중 "1천분의 25"를 "1000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	
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	
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	
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	
의 <u>1천분의 25</u> 범위에서 총회	<u>1000분의 50</u>
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	
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	
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	
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	
과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